탄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번호	2026도6826
피고인	김건희
담당 법원·재판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단계	상고심

1. 탄원의 취지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저는 이 사건의 당사자를 개인적으로 잘 안다는 이유로 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모든 행위와 의사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주식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는 엄정하게 판단하되, 그 책임이 피고인 자신의 행위를 넘어서서는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바람은 결론을 정해 두고 봐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죄로 인정된 거래가 있다면 그 근거를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법률상 판단이 엇갈린 부분이 있는 만큼, 단 한 사람에게도 부당하게 넓은 책임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살펴 주십시오.

2. 원심이 인정한 중대한 책임에 관하여

2026년 4월 28일 항소심은 피고인이 거액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2010년 10~11월 매도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중 약 13만 주가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세조종에 사용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으며 관련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본 점도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판단입니다. 이러한 사정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정산 이후에도 공범들의 시세조종이 계속된 점 등을 들어 포괄일죄와 공소시효 문제도 판단했습니다. 부디 이 법률적 연결이 피고인이 실제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 범위와 얼마나 정확히 부합하는지 상고심에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혐의를 부정하는 감정만으로 그 판단을 뒤집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3. 사건에 관여한 경위와 실제 실행 행위

항소심은 18만 주 매도 가운데 약 13만 주를 통정매매로 보고, 계좌와 자금 제공 및 수익의 40% 정산 약정 등을 들어 미필적인 시세조종 인식과 순차공모를 인정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구체적인 판단입니다. 단순히 계좌 명의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되었다는 식으로 원심 이유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항소심은 2011년 1월 13일 정산 이후의 일부 거래는 시세조종으로 보지 않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산 전후의 행위 구분과 포괄일죄 판단이 공소시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률상 책임이 실제 인정된 공동의사의 범위에 맞게 연결되었는지 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4. 피고인의 실제 지시와 그 결과

항소심은 피고인이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와 자금을 제공하고 수익의 40%를 정산하기로 한 사정, 18만 주 매도 가운데 약 13만 주를 통정매매로 본 사정 등을 결합하여 미필적인 인식과 순차공모를 인정했습니다. 이를 단순한 계좌 명의 제공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소심은 2011년 1월 13일 정산을 마친 이후의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으로 보지 않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시기별 평가가 달라진 사정까지 고려해, 실제 가담 기간에 대한 판단과 공범들의 계속된 행위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묶는 법률 적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5. 피고인에게 유리한 개별 사정

항소심은 피고인이 시세조종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고려된 사실을 처음 발견된 정상처럼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법률상 유죄의 범위가 변경된다면 이러한 개별 관여의 폭이 전체 책임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좌 제공, 실제 주문, 다른 관계자의 매매 사이에 확인된 공동의사의 범위가 구별된다면 그 차이는 형사책임의 경계를 정하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의 범죄 인식이 확인되지 않은 시기와 거래까지 책임이 확장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6. 피고인의 진술과 사건 이후 태도

항소심은 피고인이 죄책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도 양형 과정에서 지적했습니다. 그 판단이 있었다는 점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고심에서 법률상의 쟁점을 다투는 행위와, 사실로 확인된 범행 후의 행동은 구별하여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유죄 범위가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순간에는 피고인의 설명 중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 이유를 기록과 법률에 기대어 신중히 가려 주십시오.

7. 개인별 양형 사정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식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항소심이 인정한 불리한 사정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유죄 범위와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그에 따른 법률적 책임 또한 정확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고심에서 법률상 잘못이 발견된다면 적법한 방식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법이 정한 범위에서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거래나 관여가 인정되지 않은 기간까지 양형의 불리한 인상으로 덧붙이지는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 법률에 따른 공정하고 균형 있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상고심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존중합니다. 항소심은 계좌와 자금 제공, 약 13만 주의 통정매매, 수익 정산 약정 등을 근거로 일정 기간의 순차공모와 미필적인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이 판단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정산 이후의 거래를 달리 본 이유와, 그 전후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평가한 이유가 법률상 모순 없이 양립하는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상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시정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9. 결어

존경하는 재판부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식시장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의 무거움을 충분히 헤아리시되, 김건희 피고인의 실제 관여와 법률상 공동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를 엄격히 구별해 주십시오.

법률상 잘못이 확인된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증명된 책임의 경계 안에서 공정한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제 글을 살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참고자료

사건 경과 및 공개 판단

1. 대한민국 대법원 | 주요 재판 안내: 2026도6826 전원합의체

2026. 10. 22. · 같은 상고 사건에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알선수재를 함께 심리한 경과.

https://www.scourt.go.kr/supreme/info/JpBoardListAction.work?gubun=2

2. 연합뉴스 | 도이치 주가조작 공동정범·포괄일죄 항소심 판단

2026. 4. 28. · 계좌 제공, 수익 40% 약정, 18만 주 매도 중 13만 주 통정매매, 정산 전후 책임과 포괄일죄 판단의 이유를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60428183000004

3. 경향신문 | 도이치모터스 13만 주 통정매매 판단

2026. 4. 28. · 항소심의 미필적 인식, 통정매매 및 포괄일죄·공소시효 설명.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281526001

4. 연합뉴스 |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금품 상고심 배당

2026. 5. 26. · 항소심 징역 4년·벌금 5천만원, 도이치 일부 유죄와 통일교 부분 유죄 확대, 명태균 부분 무죄 유지.

https://www.yna.co.kr/view/AKR20260526038700004

5. 연합뉴스 | 명태균 정치자금 혐의·전원합의체 회부 경과

2026. 7. 23. · 김건희 1·2심 무죄, 별도 사건의 엇갈린 판단 및 전원합의체 회부 배경.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3142452004

참고자료

적용 법령과 판단 기준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법령 공개조문 · 통정매매 등의 금지와 행위 당시 법령의 적용.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33241

7.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026. 10. 2. 시행 · 공동 실행과 개인의 형사책임을 살피는 기준.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370081

8.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2026. 10. 2. 시행 · 상고이유 중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및 제한적인 사실오인·양형부당 사유.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3&lsiSeq=29…

9.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2026. 10. 2. 시행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법정 기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07&lsiSeq=29…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2026. 10. 2. 시행 ·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사정.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1&lsiSeq=29…

인용된 공개 보도의 판결 설명은 판결문 전문 또는 상고이유서 원문과 같지 않습니다. 형벌법규는 각 행위 시기의 적용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